

2022년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보건의료R&D사업 지원방안

(’22.3. 한국보건산업진흥원 R&D사업지원팀)

□ 추진배경

- 코로나19의 세계적인 재확산이 지속됨에 따라, R&D사업 추진시 연구자의 안정적인 연구활동 지속 지원 필요
 - 확진자 및 의심환자 발생에 따른 연구공백 발생 최소화
 - 「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특별지침」(’22.3.2)에 따라 중소·중견기업의 연구비 부담기준 완화

⇒ 코로나19 사태의 특수성을 반영한 지원방안 마련을 통해 연구자의 연구공백과 연구기관의 부담을 최소화하여 연구의 지속성 및 역량 확충

□ 지원방안

- (중소·중견기업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부담기준 완화 및 인건비 인정범위 확대)
 - * (적용대상) 2022년도 연구개발과제 수행중인 중소·중견기업(단,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부담기준 완화의 경우 백신 임상시험 3상을 수행하기 위한 연구개발과제에 한함)
 - * (적용기간) 2022.3.2.부터 해당연도 연구개발기간 종료일까지(’22년 한시 적용)
 - * (적용방법) 수정계획서 또는 협약변경을 통해 적용
- (기관부담연구개발비) 코로나 19로 인해 연구여력이 위축된 중소·중견기업의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부담기준을 완화하여 적용

<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부담기준 >

구분	2021.12월까지	2022년 1월부터
중소기업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부담비율	25% 이상	<u>20% 이상</u>
중견기업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 비율	13% 이상	<u>10% 이상</u>
현금부담 납부기한	연도별 연구기간 종료 3개월 전	<u>연도별 연구기간 종료전</u>

*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변동 없음

- (인건비 인정범위) 중소·중견기업의 인력고용 부담 완화를 위해 해당과제에 참여하는 신규채용인력 뿐 아니라 기존인력도 인건비 현금 집행 허용

- **(협약변경 신청기한·횟수 완화) 코로나19 등 재난사유로 연구지연**이나 공백 발생 시, 연구기간 제한에 구애받지 않도록 **협약변경 신청** 기간(과제 종료 1개월 전) 및 **횟수(1회에 한함), 연장기간 제한 완화** 첨부1
 - 신청기한, 횟수, 연장기간 제한 없이 협약변경 가능
- **(연구시설·장비 구입, 소프트웨어 계약 기한 완화) 경제적·사회적**으로 중대한 사유 발생 시, 연구시설·장비 구입·설치 또는 임차 기한 및 연구용 소프트웨어 계약기한(과제종료 2개월 전)을 **과제 종료 1개월 전까지로 완화**
- **(정산 반납기한 완화) 경제적·사회적으로 중대한 사유 발생 시, 연구비** 회수금액의 반납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허용
 - * (조치방법) 정산반납기한 이전에 납부지연사유 및 공문을 전문기관 정산담당자에게 제출
- **(감염병 대처·예방 경비 지원) 코로나19 대처·예방을 위한 불가피한** 부가경비의 연구비 집행 허용 첨부2
 -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한 국내외 행사(학술대회, 세미나 등)나 출장 등의 취소수수료(위약금), 감염병 예방을 위한 부가경비(소독, 물품 구입 등)를 연구비로 지급할 수 있도록 허용
- **(중소·중견기업 정부납부기술료 납부기간 연장) 중소기업의 재정적** 부담완화를 위해 **정부납부기술료 납부기간 연장 허용** 첨부3
 - 코로나 19로 인한 피해 중소기업이 '22년 정부납부기술료 납부 대상기관인 경우, 납부기한일 전까지 최대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납부기간 연장 허용
- **(비대면 연구비 사용 교육 지원) 연구기관의 협약 및 정산업무** 지원을 위해 연구개발혁신법 등을 반영한 **'연구비 관리 매뉴얼'과 동영상 제작 및 온라인 배포**
 - * 주요 내용 : 연구개발혁신법 주요 내용, 협약·정산 절차, 주요 불인정사례 등

매뉴얼 및 동영상 확인 사이트	
보건의료기술종합정보시스템 https://www.htdream.kr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(매뉴얼) - 자료실 - 매뉴얼 - 사업관련 매뉴얼 - 연구비 사용 안내 • (동영상) - 퀵메뉴 - 연구비 온라인 교육

□ 협약변경 신청기한·횟수 완화

- (기본원칙) 과제종료 1개월전 협약변경 신청, 1회 한해 최대 1년 연장
- (완화내용)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등의 사유인 경우 협약변경 신청기한, 횟수, 연장기간 제한 없음
- (처리방법) 협약변경 신청서를 공문으로 제출(연구기관→진흥원 연구과제 담당자) 후 승인여부 검토(진흥원 연구과제 담당자)

□ 연구시설·장비 구입기한 완화

- (기본원칙) 과제종료 2개월전까지 연구시설·장비의 구입·설치 또는 임차를 완료한 경우에 해당 연구시설·장비비 계상 가능
- (완화내용) 경제적·사회적으로 중대한 사유 발생 시, 과제종료 1개월전까지 연구시설·장비의 구입·설치 또는 임차를 완료한 경우에 해당 연구시설·장비비 계상 가능
- (처리방법) 구체적 사유를 포함하여 공문으로 제출(연구기관→진흥원 연구과제 담당자) 후 승인여부 검토(진흥원 연구과제 담당자)

□ 소프트웨어 계약기한 완화

- (기본원칙) 과제종료 2개월전까지 사용계약을 체결하는 소프트웨어(데이터베이스와 네트워크를 포함)에 대하여 소프트웨어 활용비 계상 가능
- (완화내용) 경제적·사회적으로 중대한 사유 발생 시, 과제종료 1개월전까지 사용계약을 체결하는 소프트웨어(데이터베이스와 네트워크를 포함)에 대하여 소프트웨어 활용비 계상 가능
- (처리방법) 구체적 사유를 포함하여 공문으로 제출(연구기관→진흥원 연구과제 담당자) 후 승인여부 검토(진흥원 연구과제 담당자)

□ 배경

- 최근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관련 경비 집행에 대한 문의 급증으로 R&D사업 연구비 집행 기준을 아래와 예외적으로 인정함

<참고 : 코로나19 관련 최근 주요 질문>

- ① **(대처)** 코로나19 대처를 위해 학회참석이나 행사개최를 취소함에 따라 발생한 경비(취소 수수료 등)를 연구비로 집행할 수 있나요?
- ② **(예방)** 손세정제, 일회용 마스크 등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물품을 연구비로 구입할 수 있나요?

□ 코로나19 대처 및 예방 관련 경비 인정기준

- **(대처)** 코로나19 대처를 위해 연구계획을 불가피하게 변경함에 따라 **부가적으로 발생한 경비***는 연구비로 집행 가능

* 학회 취소에 따른 항공 및 숙박 예약 취소 수수료, 기 납부 학회등록비, 회의장 대관 및 행사 용역 취소에 따른 위약금 등

- **(예방)** 연구 수행에 따른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**경비***는 연구비로 집행 가능

* 해당 과제와 관련된 회의 및 행사 참여자들의 코로나19 감염 예방물품(손세정제, 일회용 마스크 등) 구입 경비

⇒ 단, 해당 과제 참여연구원의 연구실안전 등을 위한 손소독제, 마스크 구입비용 등은 간접비(연구실안전관리비)로 집행해야 함

□ 기타

- 과제 수행과 무관하게 개인적인 사유로 발생한 취소수수료(위약금 등 포함) 등은 연구비로 집행 불가

□ 경비 인정기준에 따른 증빙서류

구분 (사용용도)	인정기준	증빙서류
손세정제, 일회용마스크 (연구활동비- 연구실 운영비)	해당사업(연구)과 관련된 회의 및 행사 참여자들의 코로나19 감염 예방물품(손세정제, 일회용마스크) 구입경비는 직접비에서 인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회의개최에 대한 사전 내부결재 구비, 내부결재 시 회의 목적, 일시, 장소, 회의내용, 참석자, 소요경비 내역(다과비, 식대, 감염 예방물품 구입 등)포함
학회·세미나 참가비 (연구활동비- 그 밖의 비용)	기 납부한 학회등록비 취소에 따른 수수료 및 전액 직접비에서 인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학회참석을 위해 학회 측과 교신한 메일, 학회 취소를 인지한 시기에 대한 자료, 연구자의 소속기관에서 해외출국 전면금지 안내문, 학회 예정지 코로나 확진자 발생 기사 등 합리적인 자료 구비
출장(항공, 숙박 등) (연구활동비- 출장비)	기 결재한 항공 및 숙박비 취소 수수료 및 전액 직접비에서 인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연구자의 소속기관에서 해외출국 전면금지 안내문, 연구자가 소속되어 있는 지역의 코로나 확진자 발생 등 합리적인 자료 구비 • 단, 계약 여행사 폐업/부도 시 계약관련 일체 서류, 환불규정, 상호간 메일, 여행사의 폐업/부도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등 구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(폐업) 국세청 홈텍스(www.hometax.go.kr) →조회/발급→사업자 상태→사업자 등록번호 조회 ▶(부도) 금융결제원(www.kftc.or.kr)→당좌거래 정지자 조회→사업자(주민) 번호, 법인명 또는 대표자 성명으로 조회

첨부3

중소·중견기업 정부납부기술료 납부기간 연장

구분	정부납부기술료 납부기간 연장
지원대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'22년 정부납부기술료 납부대상과제
지원내용	<p>피해 중소기업이 정부납부기술료 납부기한일 전까지 연장신청할 경우 최대 1년까지 연장</p>
<p>피해 중소·중견 기업 기준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액 10% 이상 감소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② 특별재난지역 선포 지역 소재 중소기업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※ 향후 감염병 관련 특별재난지역이 추가 선포되는 경우 추가지역도 포함 ③ 소속 임직원이 코로나19에 감염(확진)된 사실이 있는 중소기업
<p>처리방법 및 제출서류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input type="checkbox"/> 처리방법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정부납부기술료 납부기한일 전까지 신청 <input type="checkbox"/> 제출서류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피해 중소기업의 납부연장 신청(연장기한 명시) 공문 • 피해 입증 서류 : 매출액 10%이상 감소 증빙서류, 소재지 명기 서류, 소속 임직원의 입원치료통지서, 감염확진 진단서, 격리대상 통지서 등